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이봉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3
----------	-------

발의년월일 : 2015. 6. 5.

발 의 자 : 이봉수·김윤정·문정애·
백남환·서종수·유호렬·
이동주·이학래·차재홍·
한일용의원(10명)

1. 제안이유

최근 근로자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구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1.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라.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공공 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9조)
- 바. 위원의 수당(안 제10조)

4. 관계법령

- 가. 「근로기준법」 제2조
- 나. 「최저임금법」 제4조, 제6조 및 제8조

5. 예산조치

- 가. 소요예산 : 금657,848천원(2016년 예산에 편성토록 협의)
- 나. 산출기준
 - 1) 적용기준 :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월 1,397,583원)
 - 2) 2015년 현재 : 지급대상자 445명, 예산 614,812천원
 - 3) 2016년 이후 : 약7% 정도의 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예산 657,848천원
예산 비용 발생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6. 8. ~ 6. 12.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불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의 적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